

대법원 2024. 10. 8 선고 2024다25720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---

### 재판경과

대법원 2024. 10. 8 선고 2024다257201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4. 5. 23 선고 2022나101103 판결

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22. 11. 10 선고 2021가소14258 판결

### 전문

#### 원고, 피상고인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

담당변호사 이덕재, 채원기

#### 피고, 상고인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, 김상택

판결 선고 2024. 10. 8.

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2나101103 판결

### 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,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재판장대법관권영준**

**주심대법관김상환**

**대법관오경미**

**대법관박영재**